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호

2026년도 제1·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624명

가. 제1회 임용시험 : 615명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 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1회 임 용 시 험 (6.20.)	공개 경쟁	행 정 (일 반 행정)	일 반	9급	24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장 애 인	9급	7	
			저 소 득 층	9급	7	
			지 방 의 회	9급	10	
		세 무 (지 방 세)	일 반	9급	1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 산 (전 산)	일 반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 산 (데 이 터)	일 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일 반	9급	10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저 소 득	9급	6	
		사 서 (사 서)	일 반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시 험 명		직 렬 (직 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1회 임 용 시 험 (6.20.)	공개 경쟁	공 업 (일 반 기 계)	일	반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 반 전 기)	일	반	9급	1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 업 (일 반 화 공)	일	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 반 농 업)	일	반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 림 자 원)	일	반	9급	1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산 림 보 호)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녹 지 (조 경)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 건 (보 건)	일	반	9급	1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 품 위 생)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 호 (간 호)	일	반	8급	5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 건 진 료)	일	반	8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환 경 (일 반 환 경)	일	반	9급	1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 반 토 목)	일	반	9급	4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일	반	9급	2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 설 (지 적)	일	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 재 안 전)	일	반	9급	1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일	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시 설 관 리)	일	반	9급	2	필수(2) : 국어, 한국사 선택(1) : 전기이론
			보훈청추천		9급	1	
		시설관리 (수 도 기 계)	일	반	9급	1	필수(3)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보훈청추천		9급	1	

시 험 명	직 렬 (직 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1회 임 용 시 험 (6.20.)	경력 경쟁	수의연구 (수 의)	일 반 연구사	2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 의 (수 의)	일 반 7급	8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의료기술 (의 료 기 술)	임 상 병 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 사 선	9급	
			물 리 치 료	9급	
		운 전 (운 전)	일 반 9급	2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나. 제2회 임용시험 : 9명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 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2회 임 용 시 험 (10.31.)	공개 경쟁	행 정 (일 반 행 정)	일 반 7급	5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기록연구 (기 록 연 구)	일 반 연구사	1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행정학
		공 업 (일 반 전 기)	기 술 계 고 출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 반 토 목)	기 술 계 고 출	9급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물리는 물리학 I 에서 출제하고,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2015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됩니다.

※ 지방의회 구분모집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광주광역시의회 또는 구의회(5개구)이며, 그 외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광주광역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5개 자치구입니다.

- 다만, 시설관리직렬 중 수도기계 직류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임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기합격자 제출 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면접시험 결과가 '우수' 또는 '미흡' 등급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가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험 명	결 정 방 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참고

3

필기시험 시간

시 험 명		직 급(구분)	직 렬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급·9급	전 직렬 (시설관리 제외)	5과목	10:00 ~ 11:50 (110분)
			시설관리	3과목	10:00 ~ 11:00 (60분)
	경력경쟁	연구사	수의연구		
		7급	수 의		
		9급	의료기술		
			운 전	2과목	10:00 ~ 10:40 (40분)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7급	행 정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	연구사	기록연구	6과목	10:00 ~ 12:00 (120분)
		9급 (기술계 고졸)	공업, 시설	3과목	10:00 ~ 11:00 (60분)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5배 연장자 10:00~12:45 (165분), 1.7배 연장자 10:00 ~ 13:10 (190분)

4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추가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 23.(월) ~ 3. 27.(금)	3. 23.(월) ~ 3. 30.(월) [5. 18.(월) ~ 5. 20.(수)]	필기시험	5. 29.(금)	6. 20.(토)	7. 14.(화)
			면접시험	7. 14.(화)	8. 6.(목) ~ 8. 13.(목)	9. 1.(화)
제2회 임용시험	7. 20.(월) ~ 7. 24.(금)	7. 20.(월) ~ 7. 27.(월) [9. 28.(월) ~ 9. 30.(수)]	필기시험	10. 8.(목)	10. 31.(토)	11. 19.(목)
			면접시험	11. 19.(목)	12. 9.(수)	12. 17.(목)

※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 - 시험 인사정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 등 개별 통보서비스 미제공)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면접)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거주지 제한 (아래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7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09.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함

마. 응시자격요건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면접) 시행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제1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구분)	응시자격 요건
공 개 경 쟁 임 용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보 건 진 료	보 건 진 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지 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경 력 경 쟁 임 용	연구사	수 의 연 구	수 의	수의사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9급	의 료 기 술	의 상 병 리	임상병리사
			방 사 선	방사선사
			물 리 치 료	물리치료사
		운 전	운 전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제2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요건
경 력 경 쟁 임 용	연구사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9급 (기술계 고졸 구분)	공 업	일 반 전 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 설	토 목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또는 단과대학장)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및 추천서에 따라 판단
 -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
- 기록연구사의 경우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된 『**【붙임 1】 관련 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와 자격요건 증빙서류(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9급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광주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응시 가능합니다.
 - 기술계고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26.3.27.)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고,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신청 서류 제출기간

- 제1회 : 2026. 3. 23.(월) ~ 3. 30.(월) / 제2회 : 2026. 7. 20.(월) ~ 7. 27.(월)

※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자격이 혼합된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이 (중간공백 없이) 연속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기간 등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증빙서류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 ※ 만일,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수급기간(개시, 중단 이력 포함) 및 발급담당자 성명·직급·연락처·확인(도장 또는 서명)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 이라고 기재된 차량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軍)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운전직(9급) 자격요건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참고)

<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

- 가. 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1부
 - 나.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발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붙임 3】서식(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 제출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을 통해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차.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대 상 자 :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①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출신(재학)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광주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의 중퇴자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당해 시험의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6. 7. 3.(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천 학교장은 추천대상자의 생활 기록부에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자격기준 : ①추천학과, ②전문교과 이수, ③학과 성적기준 모두 충족

- ① **(추천학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② **(전문교과 이수)**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 이상 이수하여야 함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공 업	일반전기	전기·전자 교과(군)
시 설	일반토목	건설 교과(군)

-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이 때, 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문교과 이수요건 대체 혹은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 가능)

③ (학과 성적기준)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졸업자는 고등학교 소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점수계산 방법 】

①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sum(\text{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div \text{총 이수과목} \geq 0$
-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② <전문교과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 성취도 A 비율(%) = $(\text{성취도 A 이수과목 수} \div \text{총 이수과목 수}) \times 100$

③ <보통교과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평균 석차등급 = $[\sum(\text{과목별 단위수} \times \text{과목별 등급})] \div \sum \text{과목별 단위수}$

※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2027년부터 적용) 성적 기준 ①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등급이 2.5 이내인 사람

- 응시희망자는 『【붙임 4】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따라 2026. 6. 8.(월)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2026. 6. 29.(월) ~ 7. 3.(금)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대상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필기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아래 시험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명	직급	과목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제1회 임용시험	8·9급	38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2회 임용시험	7급	7과목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기술계 고졸)	5과목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하는 아래 시험과목의 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명	직급	과목수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제1회 임용시험	9급	6과목	(공동출제)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7·9급, 연구사	13과목	(자체출제) 산림보호,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기계일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2회 임용시험	연구사	6과목	(공동출제)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다.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제1회 필기시험일 6.20.→(기준일) 4.30. / 제2회 필기시험일 10.31.→(기준일) 8.31.

라.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과목의 문제와 정답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에 게시되며, 이의제기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https://local.gosi.go.kr)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 ※ 자세한 방법은 응시원서 제출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원서 제출 방법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고객센터(☎1522-0660)

나. 제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 (시작·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취소시간 동일

다.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7천원 / 8급·9급 5천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결제단계에서 면제 처리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면제신청할 때 자격이 확인되면 결제단계에서 면제 처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등)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고, 추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환불(결제취소) 처리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추가 기간 포함) 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원서 제출 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진파일(JPG 또는 PNG)** :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 불가

마. 원서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제출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분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만이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임신부 등은 원서제출 과정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
-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IBT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일반	71	700	340	65 (Level 2)	625
청각장애	-	350	204	-	375

※ 2026년부터 토플(TOEFL) IBT 성적표 점수 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나, 기존 점수 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 체계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정범위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6.10.30.)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참조

다. 사전등록

- “사전등록”은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하여, 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등록대상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어학성적 사전등록” 메뉴에서 시험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시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된 유효한 영어성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인사혁신처 연계신청을 통해 성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 대상이 아님

라. 성적제출 방법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026.10.30.)까지 등록)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일 시행예정일 전날까지(2026.10.30.)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 2026. 7. 25. (토) ~ 10. 30.(금)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등록 후 원서접수 화면에서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 과락 처리됩니다.

- '영어등록 사전등록' 메뉴에만 성적을 입력할 경우, 성적 확인이 불가하며,
'접수완료 원서' 메뉴에서 성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

- (인정범위)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①'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②'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어음(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진단서 제출)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의사소견서는 불인정)
- (발급기관) 진단서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시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① 면제대상 판단기준 검사방법, ②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③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아래 예시표 참조)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30%인 사람으로서
-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미포함)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우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시험에 한하며, 최초 1회 제출하면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기하되, 진단서는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불필요
 -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 2026. 7. 25. (토) ~ 10. 30.(금)

10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적용대상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1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동일 직렬(직류)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 가산점 적용 (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 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 특전은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 점 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마」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가산점수)**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가산점수)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득점에 각 과목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 의사상자 등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 044-202-3255) 에 본인이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 (가산방법)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군,직렬(류)별 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

① 행정직군

직 렬(직 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② 행정직군(전산),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군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붙임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확인

구 분	7급, 연구·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 해당 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의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점 등록기간

- 제1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 2026. 6. 20.(토) ~ 6. 22.(월)
- 제2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 2026. 10. 31.(토) ~ 11. 2.(월)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정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
 -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경력경쟁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합니다.
 -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카.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 파.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062-613-6281~5)

15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2026년부터 변경사항

①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 요건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직류)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 가능,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
- * 관련 자격증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참조
- * 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때도 전문교과 이수 요건 대체 혹은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

② 신규임용시험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당 초			변 경('26년부터 적용)
직렬(직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5%	관련내용 삭제
의료기술(의료기술)	방사선관리, 의공 등	3~5%	관련내용 삭제
시설관리(수도기계)	없음 (가산점 미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시설관리(수도전기)			
시설관리(수도화공)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개정사항 반영 (붙임5 참고)

③ 직류명 변경

변경전	변경후 ('26년부터 적용)
농촌지도(농업)	농촌지도(작물)
농촌지도(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공학)

④ 시험시간 중 응시자 화장실 사용 가능

-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재입실 가능)
 - 사용 가능 시간 외 또는 2회 이상 사용 시 재입실 불가(시험시행본부 대기)

2027년부터 변경사항

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도입 및 문항 수 확대**

- 현행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

< PSAT(공직적격성평가) 개요 >

- ▶ (개념)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측정하여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
- ▶ (평가영역) 언어논리(이해·논리력), 자료해석(수치적용·분석력), 상황판단(판단·의사결정능력) 등
- ▶ (주요연혁) 외무고시('04), 5급 공채('05), 민간경력자채용('11), 경호 7급 공채('19), 국가직 7급 공채('21)

○ 시험절차 변경

- (현행)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
- (변경) **1차 필기(1차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

○ 국어과목을 제외한 4과목 문항 수 5문항씩 확대

구분		공통과목	전문과목			선택과목
		국어	헌법	(예)행정법	(예)행정학	(예)지방자치론
현행	100문항 (100분)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						
변경	100문항 (100분)	PSAT 대체	25문항	25문항	25문항	25문항

* 7급 경력경쟁임용시험(수의, 연구·지도직 등)은 기존대로 과목당 20문항 유지

②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및 문항 수 확대**

-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4과목 문항 수 5문항씩 확대

구분		공통과목			전문과목	
		한국사	국어	영어	(예)행정학	(예)행정법
현행	100문항 (110분)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20문항
↓						
변경	100문항 (110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3급 이상)	25문항	25문항	25문항	25문항

* 공개경쟁임용시험 3과목 시험 직렬(시설관리, 방호 등)도 한국사 과목 대체 및 문항 수 개편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의료기술, 운전 등)은 기존대로 과목당 20문항 유지

③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현 행	변 경 (2027년~)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해당 동점자 중 전문과목(제2차 시험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순 으로 선발예정 인원내 달할때까지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8],[별표9],[별표9의2]참조

④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설(지적직류) 필기시험 과목 변경

직렬(직류)	직급	현 행	변 경 (2027년~)
시설(지적)	7급	국어, 한국사 ^{대체} , 영어 ^{대체}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PSAT, 한국사 ^{대체} , 영어 ^{대체}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대체} , 지적측량, 지적법규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에 의함

⑤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 학교 및 학과 성적 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2027년~)
전문교과군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응시자격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 형고)의 졸업(예정)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특성화 학과 한정) 의 졸업(예정)자
학과성적 기준	①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B등급 이상 이고, ②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B등급 이상 이고, ②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등급 2.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인사정보 → 우리시공무원】**

- 붙임 1. 관련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 1부.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3. 운전직(9급) 자격요건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서식) 1부.
4.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 안내 1부.
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 끝.